


# 대한민국국회

문서번호	행관 제290호	(전화번호 788 - 2044)		의 장
취 급		차 장	총 장	209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년			
시행일자	1999. 12. 15.			
실 장	전 결			
담 당 관	복	협 조		
기 안	남 원 회			
수 신 참 조			발 신 명 의	
제 목	국회사무처직제 개정통보			
<p style="text-align: center;">국회사무처직제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붙임      국회사무처직제개정규칙 1부. 끝.</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0px 0;"> <h2 style="font-size: 2em;">국 회 의 장</h2>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10px auto;">             기획조정실장 전결         </div> </div> <p>수신처 갑, 을, 의정연수원</p>				

210mmmm × 297mm  
인쇄용지(특급) 70 g/m<sup>2</sup>

# 國會事務處職制改正規則

## 提案理由

強力하고 效率的인 立法支援體制를 構築하기 위하여 法制 및 政策支援部署를 強化하고, 對內·外의 유능한 人的資源을 契約職公務員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開放型職位制를 도입하며, 議政研修院이 廢止됨에 따라 동 기능을 事務處로 吸收·統合하고, 國會記錄物의 體系的 管理를 위하여 國會記錄保存所를 設置하는 한편, 各 部署의 기능을 合理的으로 調整하여 일부 下部組織을 統·廢合하고, 行政支援人力을 減縮하여 작지만 生産性이 높은 組織을 具現하기 위한 것임.

## 主要骨子

- 가. 새로운 立法環境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課단위 機構의 설치와 事務分掌을 事務總長이 정하도록 委任하여 組織運營에 대한 自律性과 彈力性을 부여함(案 第2條).
- 나. 國會事務處法이 개정되어 開放型職位制가 도입됨에 따라 3級이상 一般職公務員의 職位중 公報官 등 專門性이 특히 요구되는 職位에 대하여 契約職公務員으로 補할 수 있도록 함(案 第4條·第6條·第8條·第10條·第12條 및 第15條).
- 다. 公報局을 폐지하고, 事務總長 직속의 公報官을 신설하여 國會의 弘報 機能을 수행하도록 함(案 第4條).

- 라. 議員立法活動支援을 강화하기 위하여 立法·政策支援部署인 法制豫算室을 기능별로 분리하여 法制室과 豫算政策局으로 개편함(案 第6條 및 第8條).
- 마. 記錄編纂局을 폐지하되 速記1·2課 業務는 議事局으로 이관하여 局長밑에 記錄審議官을 두도록 하고, 國회사료관련 업무는 國會記錄保存所로 이관함(案 第7條 및 第14條).
- 바. 事務次長밑에 두고 있는 非常計劃官을 企劃調整室長밑에 두도록 함(案 第9條).
- 사. 독립기관인 議政研修院이 폐지됨에 따라 연수관련 사무를 國會事務處가 담당하도록 하고 事務次長밑에 研修局을 둠(案 第12條).
- 아. 公共機關의記錄物管理에 관한法律이 제정됨에 따라 國會記錄物의 體系的 保存과 活用을 위하여 事務次長밑에 國會記錄保存所를 設置함(案 第14條).
- 자. 法制·豫算分析·政策分析·通譯·翻譯 및 研修 등에 필요한 專門人力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契約職公務員을 둘 수 있도록 함(案 第17條).
- 차. 定員을 2,960人으로 함(案 別表).

# 國會事務處職制改正規則

1999. 11. 26 國會規則 第106號 全文改正

國會事務處職制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國會事務處職制

第1條(目的) 이 規則은 國會事務處法の 規定에 따라 國會事務處(이하 “事務處”라 한다)의 下部組織과 그 分掌事務, 職位에 대한 職級, 公務員의 職級別 定員 기타 事務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下部組織) ①事務處에 企劃調整室·法制室·議事局·豫算政策局·管理局·國際局·研修局·總務課 및 國會記錄保存所를 두되, 法制室·議事局·豫算政策局은 立法次長밑에, 企劃調整室·管理局·國際局·研修局·總務課·國會記錄保存所는 事務次長밑에 둔다.

②事務總長밑에 公報官 및 監查官 각 1人을 둔다.

③室·局 및 官(이하 “室·局”이라 한다)밑에 두는 課 및 이에 상당하는 擔當官의 設置와 事務分掌에 관한 사항은 事務總長이 이를 정한다.

第3條(公務員의 定員) 事務處에 두는 公務員의 定員은 別表와 같다.

第4條(公報官) ①公報官은 理事官·副理事官, 2級상당·3級상당 別定職

國家公務員 또는 契約職公務員으로 補한다.

②公報官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事務總長을 보좌한다.

1. 國會活動의 弘報에 관한 사항
2. 言論機關 및 報道에 관한 사항
3. 國會放送에 관한 사항

第5條(監査官) ①監査官은 理事官 또는 副理事官으로 補한다.

②監査官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事務總長을 보좌한다.

1. 司正業務에 관한 사항
2. 事務處 및 傘下團體에 대한 監査
3. 陳情 및 非違事項의 調査·처리
4. 公職者 財産登錄에 관한 사항
5. 國會公職者倫理委員會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公職者 등의 兵役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7. 기타 事務總長이 監査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第6條(法制室) ①法制室에 室長 1人을 두고, 室長밑에 法制審議官 1人을 둔다.

②室長은 管理官·理事官 또는 契約職公務員으로, 法制審議官은 副理事官으로 補한다.

③室長은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1. 國會議員 또는 委員會가 요청한 法律案의 立案 및 檢討
2. 行政立法에 관한 分析·評價 및 研究

3. 國內外의 法制와 그 운용 등에 관한 調査 및 研究

4. 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의 弘報

5. 기타 國會議員의 法制活動에 관한 지원

④法制審議官은 法律案의 立案·檢討 등 法制業務에 관하여 室長을 보좌한다.

第7條(議事局) ①議事局에 局長 1人을 두고, 局長밑에 記錄審議官 1人을 둔다.

②局長은 理事官 또는 副理事官으로, 記錄審議官은 副理事官으로 補한다.

③局長은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1. 本會議 議事進行 보좌

2. 交渉團體·議席配定 및 委員選任 등에 관한 업무

3. 委員會 一般行政業務 지원 및 會議狀況 綜合

4. 議案 등의 접수·배부·회부 및 이송

5. 請願·陳情 기타 民願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6. 國會의 警護 및 防護

7. 國會의 傍聽 및 參觀

8. 本會議 및 委員會의 會議錄作成·編輯 및 發刊

④記錄審議官은 第3項第8號의 사항에 관하여 局長을 보좌한다.

第8條(豫算政策局) ①豫算政策局에 局長 1人을 두고, 局長밑에 豫算政策審議官 1人을 둔다.

②局長은 理事官 또는 副理事官으로, 豫算政策審議官은 副理事官 또

는 契約職公務員으로 補한다.

③局長은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1. 國會議員 또는 委員會가 요청한 國家豫算·決算·主要政策 및 事業計劃의 分析·評價와 政策代案의 開發
2. 國家豫算·決算 및 政策에 관한 調査·分析·評價 및 研究
3. 外國의 豫算·決算 및 政策에 관한 調査 및 研究

④豫算政策審議官은 國家豫算·決算 및 政策에 관한 調査·分析 및 評價業務에 관하여 局長을 보좌한다.

第9條(企劃調整室) ①企劃調整室에 室長 1人을 두고, 室長밑에 非常計劃官 1人을 둔다.

②室長은 管理官 또는 理事官으로, 非常計劃官은 2級상당 또는 3級상당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③室長은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1. 基本運營計劃의 수립 및 綜合·調整
2. 각종 業務計劃의 指針 수립 및 綜合·調整
3. 國會豫算의 編成·執行의 調整
4. 組織 및 定員管理
5. 行政制度改善計劃의 수립과 그 執行의 指導·監督
6. 提案制度의 運營
7. 國會規則·規程·內規 등의 制定·改正 등에 관한 사항
8. 憲法裁判 및 行政審判 등 訴訟事務의 總括
9. 國會所管 法人의 設立 및 監督에 관한 사항

10. 國會 立法情報化推進業務의 企劃·調整 및 지원

11. 國會의 職場民防衛隊 및 職場豫備軍의 編成·運營과 非常對備業務에 관한 사항

④非常計劃官은 第3項第11號의 사항에 관하여 室長을 보좌한다.

第10條(管理局) ①管理局에 局長 1人을 두고, 局長밑에 施設審議官 1人을 둔다.

②局長은 理事官 또는 副理事官으로, 施設審議官은 工業副理事官·施設副理事官 또는 契約職公務員으로 補한다.

③局長은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1. 國有財産의 管理
2. 國會廳舍의 維持·補修管理 및 造景에 관한 사항
3. 議員會館 一般管理
4. 機械·電氣·通信設備의 維持 및 補修管理
5. 物品管理
6. 豫算의 執行
7. 決算
8. 國庫金支出
9. 物品購買 등 각종 契約

④施設審議官은 第3項第1號 내지 第4號의 技術分野業務에 관하여 局長을 보좌한다.

第11條(國際局) ①局長은 理事官·副理事官 또는 2級상당·3級상당 別



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②局長은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1. 儀典
2. 外國議員 및 外賓의 招請·迎接
3. 通譯·翻譯 등 外國語에 관한 사항
4. 議員의 訪問外交活動에 관한 사항
5. 議會關係 議員聯盟에 관한 사항
6. 國外駐在官의 업무지원
7. 議會關係 國際會議에 관한 사항
8. 國際機構와의 업무협조

第12條(研修局) ①研修局에 局長 1人과 教授 2人을 둔다.

②局長은 理事官 또는 副理事官으로, 教授는 理事官·副理事官 또는 契約職公務員으로 補한다.

③局長은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1. 教育訓練 및 研修計劃의 수립 및 執行
2. 教育課程의 研究開發
3. 國會議員研究團體 지원

④教授는 講義 및 教材執筆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第13條(總務課) ①總務課長은 副理事官 또는 書記官으로 補한다.

②總務課長은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1. 保安 및 官印의 管理

2. 文書의 分類·配付 및 受發業務의 지원
3. 國會議員의 登錄
4. 當直管理
5. 出入證의 發給·管理
6. 公務員의 任用·服務·賞罰·年金·醫療保險 기타 人事管理에 관한 사항
7. 國회사무처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8. 公務員試驗計劃의 수립 및 執行
9. 厚生 및 福祉
10. 기타 事務處內 다른 室·局·課 및 擔當官의 主管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第14條(國會記錄保存所) ①國會記錄保存所長은 副理事官 또는 書記官으로 補한다.

②國會記錄保存所長은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1. 國會記錄物 管理에 관한 基本計劃의 수립·施行
2. 國會記錄物의 蒐集·保存 및 活用
3. 國會記錄物 管理에 관한 指導·監督
4. 中央記錄物管理機關과의 협조에 의한 記錄物의 相互活用 및 保存의 分擔
5. 情報公開請求에 관한 사항
6. 憲政記念館 운영
7. 國會史料 등 憲政資料의 蒐集·編輯 및 發刊

第15條(委員會의 公務員) ①首席專門委員외의 專門委員 중 그 所管業務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契約職公務員으로도 補할 수 있다.

②委員會公務員의 職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議長이 이를 정한다.

③首席專門委員 및 專門委員을 補佐하는 立法調査官의 設置에 관한 사항은 事務總長이 이를 정한다.

第16條(公務員의 國外駐在) ①國外 議員外交活動 지원 및 國外立法資料를 蒐集하기 위하여 美洲·歐洲 및 亞洲地域에 駐在官을 둘 수 있다.

②美洲地域에 두는 駐在官은 副理事官으로, 歐洲·亞洲地域에 두는 駐在官은 副理事官 또는 書記官으로 각각 補한다.

③駐在官의 對外職名·任用·服務 및 報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事務總長이 이를 정한다.

第17條(契約職公務員의 活用) 事務總長은 法制·豫算分析·政策分析·通譯·翻譯 및 研修 등에 필요한 專門人力을 보강하기 위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契約職公務員을 둘 수 있다.

第18條(課長 또는 擔當官을 보좌하는 4級公務員) 立法支援機能을 強化하기 위하여 室·局의 課長 또는 擔當官을 보좌하는 4級公務員을 둘 수 있다.

第19條(技能職公務員定員의 統合管理) 職務의 종류·困難性 및 責任度 등을 고려하여 業務遂行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人事關係規定이 정하는 바에 따라 技能職 技能7級·技能8級·技能9級 및 技

能10級 公務員의 定員은 이를 統合하여 운영할 수 있다.

第20條(委任規定) 이 規則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事務總長이 이를 정한다.

##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規則은 法律 第6033號 國會事務處法中改正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規則의 폐지) 議政研修院職制는 이를 폐지한다.

第3條(定員에 대한 經過措置) 이 規則 施行당시 이 規則에 의한 定員을 초과하는 現員이 있는 경우에는 2000年 12月 31日까지 그 超過現員에 상응하는 定員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超過現員이 1級一般職 公務員·別定職公務員 또는 雇傭職公務員인 경우에는 2000年 6月 30日까지 그 定員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第4條(다른 規則의 改正) ①國會事務總長權限의委任에 관한規則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중 “國會圖書館長(이하 “圖書館長”이라 한다) 또는 議政研修院長(이하 “研修院長”이라 한다)”을 “國會圖書館長(이하 “圖書館長”이라 한다)”으로 한다.

第2條第1號중 “圖書館長에게 議政研修院所屬 技能職公務員의 昇進試驗과 特別採用試驗實施에 관한 사항은 研修院長에게 각각”을 “圖書館長에게”로 하고, 同條第2號중 “圖書館長 또는 研修院長에게”를 “圖書

館長에게”로 한다.

第3條 및 第4條중 “圖書館長 또는 研修院長”을 각각 “圖書館長”으로 한다.

②公職者倫理法의施行에관한國會規則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4條第1項·第26條1項 및 第27條중 “國會事務總長·國會圖書館長 또는 議政研修院長”을 각각 “國會事務總長 또는 國會圖書館長”으로 한다.

③국회정보공개규칙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제2조중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또는 의정연수원”을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도서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국회도서관장 및 의정연수원장”을 “국회도서관장”으로 한다.

[別表]

國會事務處公務員定員表

總計			2,960
政務職 計	4	一般職 計	608
事務總長	1	管理官 또는 理事官	2
次長	2	理事官	20
秘書室長	1	理事官 또는 副理事官	12
別定職 計	1,958	理事官 · 副理事官 또는 別定職(2級상당 또는 3級상당)	2
首席專門委員(1級상당)	17	副理事官	4
秘書官(1級상당)	4	工業副理事官 또는 施設副理事官	1
秘書官(2級상당)	2	3級 또는 4級	19
非常計劃官(2級상당 또는 3級상당)	1	4級	48
秘書官(3級상당)	3	4級 또는 別定職(4級상당)	2
補佐官(4級상당)	598	4級 또는 5級	43
秘書官(4級상당)	5	5級	93
4級상당	9	5級 또는 別定職(5級상당)	2
秘書官(5級상당)	301	5級 또는 契約職	13
5級상당	13	6級	282
秘書(6級상당)	302	7級	58
6級상당	10	8級	7
秘書(7級상당)	299	技能職 計	356
7級상당	16	技能6級	14
8級상당	2	技能7級	46
秘書(9級상당)	299	技能7級 또는 別定職(7級상당)	1
9級상당	77	技能8級	66
雇傭職 計	34	技能8級 또는 別定職(8級상당)	2
		技能9級	23
		技能10級	204